

정정신고(보고)

2024년 3월 19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
삼성KODEX은행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. 4. 17

3. 정정 내용

- 운용/판매보수 조정
- 투자대상자산 추가(집합투자증권)
- 기업공시서식개정 반영
- 법개정사항 반영

4. 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				
요약정보						
투자비용	*판매보수: 0.01%	*판매보수: 0.001%				
투자실적 추이 운용전문인력	-	업데이트				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		
2. 집합투자기 구의 연혁	(추 가)	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변경시행일</th><th>변경 사항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2024.03.28</td><td>운용/판매보수 조정, 투자대상자산 추가(집합투자증권)</td></tr></tbody></table>	변경시행일	변경 사항	2024.03.28	운용/판매보수 조정, 투자대상자산 추가(집합투자증권)
변경시행일	변경 사항					
2024.03.28	운용/판매보수 조정, 투자대상자산 추가(집합투자증권)					
5. 운용전문인 력	-	업데이트				
8.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대상	가. 투자 대상 (신 설)	가. 투자 대상 2) 집합투자증권				

항 목	정 정 전		정 정 후	
	투자비율	투자대상 조건	투자비율	투자대상 조건
	(신 설)		40%이하	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(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으로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
	<p>※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)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___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), 2)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		<p>※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), 2), 3)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___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), 2), 3)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	
	<p>※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4), 5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. 다만,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.(이하 생략)</p>		<p>※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5), 6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.(이하 생략)</p>	
	나. 투자 제한		나. 투자 제한	
	구분	투자제한의 내용	구분	투자제한의 내용
	(신 설)		사모집합 투자증권	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100분의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	(신 설)		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 제한	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100분의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-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)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100분의30까지 투자할 수 있다.
	(신 설)		동일 집합투자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	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100분의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(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) 단,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
	투자한도 초과	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(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제외)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매각	투자한도 초과	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(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제외)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

항 목	정 정 전		정 정 후	
		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 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 으로 본다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 로 본다. _(이하 생략)		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 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_(이하 생략)
	(신 설)		계열회사 가 발행 한 주식 의 투자	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에 대한 취득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행위. 다 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음. 가. 이 투자신탁자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. 이 투자신탁자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기초지수인 ' KRX Banks지수'에서 차지하는 비중까 지 투자하는 경우
	(신 설)		계열회사 투자한도 초과	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(해 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) 위의 계열회사 가 발행한 주식의 투자한도를 초과하 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 록 운용하여야 한다. 가. 투자신탁자산에 속하는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 나.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.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. 투자신탁자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 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. 집합투자업자의 합병, 분할, 분할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· 양수
	(신 설)		다른 집 합투자증 권에 투 자	투자신탁자산으로 자산총액의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	(신 설)		집합투자 증권 보 수 및 수 수료등	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 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 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 자(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) 또 는 투자중개업자(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)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 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 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(신 설)			종목구성제한, 추적대상제한 유예추가 지수 변경에 따른 지수 편입 종목교체 시작일 전 영 업일부터 교체 종료일까지	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	나. 환매 (추 가)		나. 환매 (7) 환매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	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						
기준가격 적용 기준		<p>이 투자신탁은 중도환매를 허용하는 투자신탁입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50 300 1342 443"> <tr> <td colspan="3" data-bbox="850 300 1342 367">수익증권의 중도환매 및 수수료 부과에 따른 3단계 구분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50 367 1010 443">중도환매 불가</td> <td data-bbox="1010 367 1169 443">중도환매시 비용 발생</td> <td data-bbox="1169 367 1342 443">중도환매 가능</td> </tr> </table>	수익증권의 중도환매 및 수수료 부과에 따른 3단계 구분			중도환매 불가	중도환매시 비용 발생	중도환매 가능
수익증권의 중도환매 및 수수료 부과에 따른 3단계 구분								
중도환매 불가	중도환매시 비용 발생	중도환매 가능			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1) 투자신탁 관련 보수등 집합투자업자보수: 0.25% 지정참가회사보수: 0.01%</p>	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1) 투자신탁 관련 보수등 집합투자업자보수: 0.259% 지정참가회사보수: 0.001%</p>						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			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업데이트						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			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<p>라. 운용자산 규모 -</p>	<p>라.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</p>						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		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<p>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2)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) ~ 4) (생략) 5)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,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) (생략) 7)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</p>	<p>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2)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 3) ~ 4) (현행과 같음) 5)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.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.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6) (현행과 같음) 7)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(법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· 게시하는 경우에만한다)</p>						